

붙임5. 정관 및 세칙 중 관련규정 발췌

□ 정 관

제3장 임 원

- 제13조(회장의 선임방법 및 임기) ① 회장은 이사회가 선임하고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다.
②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③ 회장의 선임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세칙으로 정한다.

□ 세 칙

제3장 임원

제6조(임원의 선임)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선임하여야 한다.

1. 학계·연구계·산업계의 나노관련 인사
2. 나노관련 정책·연구·인프라·정보 등의 중요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에 재직 중인 인사

제7조(회장의 선임) ①정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는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회장후보 추천위원회로부터 2인의 후보를 추천받아 이 중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회장후보는 정기총회의 주인을 거쳐 회장으로 확정한다.

제8조(회장후보추천위원회) ①이사회는 회장후보를 선임하기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고 한다)를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5개월 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.

②추천위원회는 제12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상설위원회의 위원 중 정회원 7인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과 간사는 추천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한다.

③추천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회장후보의 선발원칙 및 기준, 절차 등 결정
2. 회장후보의 발굴·추천

3.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등록후보 중 2인의 회장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한다.
단, 등록후보가 2인 미만일 경우 적정 후보를 추가 발굴·등록하여 2인의 회장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한다.

4. 기타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
제9조(회장후보 등록) 회장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 호의 추천을 받아 추천위원회가 공고한 기한 내에 소정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
2. 상설위원회 위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
3. 정회원 1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